저자와 출판사의 불공정 계약관계 불거져

가람기획·문학사상사간 저작권 분쟁 가열로 작가들과 미묘한 갈등

출판계에 잠복되어 있던 저자와 출판사의 불공정한 계약관계가 새롭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뢰와 협력에 기초해야 할 저자와 출판사의 관계가 법정 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출판문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3대 문학상을 주관하고 수상소설집을 발간해온 3사와 가람기획간의 출판권 침해에 관한 공방은 법적인 송사로 번지기 직전의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인다. 이번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출판사 사이의 분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저자와 출판사간의 저작권 계약문제가 잠복해 있다.

3대 문학상 수상작품집과 가람기획의 책들.

문학상 수상작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

최근 가람기획(대표 이광식)과 문학사상사(대표 임대현)의 저작권분쟁이 공방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이번 문제는 가람기획이 지난 6월《한국 3대 문학상 수상소설집》1~3권을 출간하면서 불거져나왔다. 3대 문학상은 문학사상사가 주관하는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사의 현대문학상, 조선일보사의 동인문학상 등 문단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학상을 말한다.

이 책이 발간되자 문학사상사·현대문학·조선일보사는 7월 1일 3사 공동명의로 가람기획에 이 소설집을 전량 회수·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전국 서점에 불법출판물의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 가람기획이 문학상 수상작에 대한 3사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람기획은 7월 6일 답변서를 통해 정면으로 공박하고 나섰다. 소설집이 작가들에게 '게재허락서'를 받아 적법하게 출간됐고 5년 전인 93년도 수상작품까지만 수록했으므로 3사의 출판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문학사상사측이 출판계약이 만료된 3년 후에도 작가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추가 인세지불이나 원고료 지급을 하지 않았으며, 출판권 설정등록을 하지 않아 제3자 대항요건이 없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4대 문학상 수상작가 대표작》(작가정신),《8대 문학상 수상작품집》(행림출판) 등의 전례도 들었다. 그후 7월 15일 원래 기획대로 전7권을 완간해 3사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에 대해 3사는 7월 27일 다시 가람기획에 최후통고문을 보냈고, 가람기획은 8월 1일 답변서를 통해 3사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아직 속단하기 이르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법적인 송사로까지 번져갈 것으로 보인다.

문학사상사의 지복진 상무이사는 "3대 문학상은 상품성이 거의 없는 중단편소설의 독자개발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면서 "만일 가람기획의 소설집이 계속 발간된다면 3대 문학상의 권위와 희소가치가 떨어질 것이기에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람기획의 소설집은 문학상을 이용해 상업적 영리를 취하려는 것으로 출판도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대문학(대표 황태랑)의 양숙진 주간은 현대문학상의 상표가 침해당한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오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현대문학상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가람기획의 양식이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출판윤리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공동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가람기획의 이광식 대표는 출판인으로서의 명예회복과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맞서나갈 것이라고 한다. "문학상을 수여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하는 발상이자 문학발전의 걸림돌"이라며 "작가의 정당한 몫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작가들, 지나친 출판상업주의에 문제제기

이번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출판사 사이의 분쟁으로 보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저자와 출판사의 저작권 계약문제가 잠복해 있다. 양측의 주장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저작권과 출판권의 '양도'에 관한 해석이다. 현대문학과 조선일보사는 물론이고 문학사상사도 86년 제10회 이상문학상 이전에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문학사상사만이 제10회 이상문학상부터 작가들에게 '이상문학상 수상수락 및 동 규정 동의서'를 받아오고 있다. 3사는 민법 제106조 '사실인 관습' 규정에 따라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저작권은 3사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작가와 출판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불공정성이다. 문학사상사의 수상 동의서에는 "저작권과 출판권을 문학사상사에 양도하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작품집을 발행한 후 3년 이후부터는 본인의 창작집 또는 전집에 수록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의 제목을 본인 또는 여타의 단행본 표제로 쓰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동) 채명기 연구원은 "법률상 저작권자가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하는 서면계약에 동의했다면 번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작가는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설명한다. 만일 문학사상사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작가들은 계약 위반자가 되고, 가람기획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작가들은 3사가 발행하고 있는 작품집을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거나 인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한편 작가들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 김정흠)측은 "작가들은 대부분 동의서를 작성하고서도 3년 이후부터는 출판권과 저작권을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86년 이전에 발행된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불법출판물로 규정하고 권리를 되찾겠다는 작가들도 있다"고 전한다.

작가들은 미묘한 입장차가 있지만 대체로 출판사의 지나친 상업주의에 대해 못마땅해 한다.〈마음의 감옥〉으로 90년도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김원일씨는 "문학상은 기본적으로 작품성을 인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이런 상식과 순리를 어기고 자본의 논리만을 따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한다.

93년도 이상문학상 수상자인 최수철씨는 수상 동의서를 받아보고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수상 후 첫 창작집과 첫 장편소설을 문학사상사에서 출판키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다른 출판사에서 창작집을 냈고, 이에 대해 문학사상사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92년도 이상문학상 수상작가인 양귀자씨는 동의서 규정들이 작가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이라고 생각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도 했다.

문단과 출판계에서는 3대 문학상의 권위에 편승하려는 가람기획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학상의 운영에 대한 관행들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상을 매개로 작가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과지성사의 채호기 주간은 "상에 대한 욕망이 앞서는 작가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상의 권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출판사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다.

— 박천홍 기자